[서식 예] 정기간행물 등록절차 불이행 위법 확인청구의 소



소 장

- 원 고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(우편번호 OOO - OOO)
- 피 고 문화관광부장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정기간행물등록절차불이행위법 확인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가 20〇〇. 〇. 〇.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그 등록절차를 불이행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
 - 원고는 2000. O. O.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정기간행물(이하 '이 사건 정기간행물'이라 합니다) 의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(갑제1호증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참조).
- 2. 피고의 부작위

그러나,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신청한 지 6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

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불이행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, 원고는 그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제1호증

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정 기 간 행 물 의 표 시

1. 제호: 000

2. 종별: 잡지

3. 간별: 주간

4. 발행인: ○○○

5. 편집인: 〇〇〇

6. 발행소 및 그 소재지: 〇〇〇

7. 발행목적 및 발행내용: ○○○

8.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: ㅇㅇㅇ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*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법률상 처분의무있는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8조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, 38조)

- 1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, 38조)

- 1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. 다만, 당해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